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1. 계량기 제조업, 계량기 수리업, 계량증명업 등록 신청서 및 계량기 수입업 신고서의 수수료 직접 명시(시행규칙 안 별지 제1호서식 및 제6호서식)

가. 개정 이유

- 행정안전부의 민원제도 개선 제안에 따라 「계량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 등 신고서의 신청 수수료에 대한 금액을 신청서에 직접 기재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함

나. 개정 내용

- 계량기 제조업, 계량기 수리업, 계량증명업 등록 신청서 및 계량기 수입업 신고서의 수수료에 “「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52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금액”을 수수료 금액((예시) 계량법 제조업 등록 : 50,000원 등))으로 직접 기재(안 별지 제1호서식 및 제6호서식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민원의 편의를 도모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

2. 형식승인 처리 기간 단축(안 별지 제10호 서식)

가. 개정 이유

- 계량기 제조업체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한 형식승인 처리 기간 완화

나. 개정 내용

- 형식승인 처리 기간을 “시험기간 +20일”로 하던 것을 “시험기간 + 15일”로 단축(안 별지 제10호 서식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계량기 제조업체 등의 형식승인 대기시간 단축을 통해 비용 부담 완화 및 신속한 제품 출시 지원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